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제출년월일 : 2010. 9./3.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안산시의 주차요금은 1989년 주차요금을 신설한 이래 20년이 넘도록 동결하여 그동안의 물가인상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주차수요관리 등 교통 정책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임.
-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절차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의 차고지 제한 규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수요 관리 및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2009. 7. 7.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정함(안 제5조제1항).
- 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조정하고, 상이자 및 장애인 등 주차요금 감면 사항과 주차요금 징수 단위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 및 제10조 별표 2)
- 다. 공영유료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한 규정 일부 조정(안 제13조제1항 제2호 별표 3)
- 라. 2009. 7. 7.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제2항 별표 5, 별표 6)

##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12조부터 제15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0. 7. 12. ~ 2010. 7. 31.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2010년 2/4분기 소비자정책심의의결서

○ 현행조례(안산시 주차장 조례)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을 “시행에 필요한” 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8조제4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를 “제1항을 준용하여”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3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가격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의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제3항에 따른 수탁료	1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금액(단, 제3항에 따른 수탁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1개월 단위로 선납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를 “(또는 인근) 토지의”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7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를 “제2항에도”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폭원” 을 “너비” 로 하고,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제3조를 준용한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를 “제6조의2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해”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을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의2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가목과 나목 중 “폭” 을 “너비”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2이상의” 를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대지가 둘 이상의”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7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6조제5항에 따라”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7조에 따라”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주차권요금으로”를 “주차요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영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노외주차장의”를 “공영주차장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영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월정주차료에”를 “월 정기 주차요금에”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호와 2호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참여하고자 하는”을 “참여하려는”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설치완료통지서를”을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을 “부과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을 “부과하려면”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 별표 2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011. 1. 1. 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교통기획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기획과 이 장 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차장담당 김 준 기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세 환 (행정 2595)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급 지 구	30분 기본요금 (1회주차 1구역 최초 30분)	10분당 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선불)	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주간	야간	전일	주말·공휴일
1 급 지	600원	300원	6,000원			80,000원	
2 급 지	500원	200원	4,000원			50,000원	
3급지	환승	300원	4,000원			40,000원	
	비환승	600원	6,000원			80,000원	
거주자 전용주차장				20,000원	15,000원	30,000원	5,000원 (수암동 지역)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간 : 08:00 ~ 20:00
  - 나. 야간 : 20:00 ~ 다음 날 08:0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2·3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으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안산동 소재 수암봉주차장
  - 나. 2급지 : 신천길앞 주차장, 외국인주민센터앞 주차장, 반월동·대부동·안산동 소재 주차장(수암봉 주차장을 제외한다)
  - 다. 3급지 : 시장이 지정한 역세권 환승주차장
  - 라. 거주자 전용주차장 : 거주자 또는 근로자 전용 노상주차장
4.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이용 확인증 또는 제직증명서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3급지 환승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 정기 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아니 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안산시에서 발행한 자가용 부제 운행참여 스티카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자(상이자 동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동승)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장애인 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마.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바.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30분을 주차할 수 있다. 다만, 30분 이후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사.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면제할인할 수 있다.

자.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20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1년간 감면한다.

차.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다자녀 가정은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의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보호지구  
: 09:00 ~ 19:00 (토요일 09:00 ~ 14:00)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 09:00 ~ 23:00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5:00 ~ 23:00

라. 건축물식 공영유료주차장(주차빌딩) : 연중 휴일 없이 1일 24시간 운영

8.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으로 징수하되,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9.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10. 1일 주차요금이라 함은 장시간 주차를 목적으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날 주차장 운영 개시 이전까지 유효하다. 다만, 철도 환승목적으로 건축물식 공영유료주차장(주차빌딩)을 이용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 적용 시간은 05: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로 한다.

[별표 3]

주차장 현황(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1	대림프라자앞주차장	고잔동 719
2	신천길앞주차장	원곡동 991-2
2	외국인주민센터앞주차장	원곡동 991-1
3	한대앞역환승주차장	이동 622-3
3	중앙역환승주차장	고잔동 723
3	고잔역환승주차장	고잔동 679-1
3	안산역환승주차장	원곡동 380
3	성포공원내주차장	성포동 593-14

[별표 4]

차고지 주차요금(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규모별 기준금액	
	차량 규모	월 정기요금(원)
택 시	개인택시, 렌트카(승용)	60,000
	2.5톤 미만	70,000
화물자동차	2.5톤 이상- 4톤미만	80,000
	4톤 이상	90,000
승합자동차	15인승 이상-25인승 미만	80,000
	25인승 이상	90,000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장신명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인수장 및 육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b>상례식장</b>	시설면적 100㎡당 1대 (단, <b>상례식장은 시설면적 80㎡당 1대</b>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비록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상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th> <th>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th> </tr> </thead> <tbody> <tr> <td>85이하</td> <td>1:85</td> </tr> <tr> <td>85초과</td> <td>1:70</td> </tr> </tbody> </table>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1:85					
85초과	1:70					
	2. 1호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주차장설치기준 (대:전용면적)</th> </tr> </thead> <tbody> <tr> <td>원룸형 주택 (상업지역·준주상지역은 1:120)</td> <td>1:60</td> </tr> <tr> <td>기숙사형 주택 (상업지역·준주상지역은 1:130)</td> <td>1:65</td> </tr> </tbody> </table>	구 분	주차장설치기준 (대:전용면적)	원룸형 주택 (상업지역·준주상지역은 1:120)	1:60	기숙사형 주택 (상업지역·준주상지역은 1:130)
구 분	주차장설치기준 (대:전용면적)					
원룸형 주택 (상업지역·준주상지역은 1:120)	1:60					
기숙사형 주택 (상업지역·준주상지역은 1:130)	1:65					
6. 골프장, 골프인수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인수장의 경우에는 1터적당 1.5대, 육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8. 광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별표 6]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2. 설치 가능 시설물

상업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설치 가능 대수

가.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이하

: 자주식 주차장 설치

나.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초과

: 50대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의 최대 2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증설되는 주차대수가 30대 이상

: 증설되는 주차대수의 최대 20% 이하 (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라. 단순 2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4. 설치 조건

제2호의 설치 가능 시설물 중 집합건축물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필요한 .....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거부 금지)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주차거부 금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에 따른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해당 .....
㉢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		제1항을 준용하여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5조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 (생 략)		㉠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또는 능력(실적)이 있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리수탁료	관리수탁보증금	납부방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수탁자	매년 1월 15일까지	1년도 1회	현금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	매년 1월 15일까지	1년도 1회	현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탁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m<sup>2</sup>) × 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2.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m<sup>2</sup>) × 면수 × 당해(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 지수
3.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m<sup>2</sup>) × 면수 × 당해(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 지수

※ 지수 =  $\frac{\text{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text{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 대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 ⑦ (생략)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무료개방 및 사용일수, 납부할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

제6조 (생략)

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  
.....  
.....

구분	관리수탁료	관리수탁보증금	납부방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수탁자	매년 1월 15일까지	1년도 1회	현금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	매년 1월 15일까지	1년도 1회	현금

③ 제2항에 따른 .....  
.....  
.....

1. .... 해당 (또는 인근) 토지의 .....  
.....
2. .... 해당.....  
.....
3. .... 해당.....  
.....

※ 지수 =  $\frac{\text{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text{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④ 제3항에 따른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 ..... 제14조제2항에 따라 .....

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차요금 외에 당해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생략)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 노상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노상에는 근로자 전용주차구획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른 .....

..... 해당 .....

④ ..... 제2항에 따른 ..... 제3항에 따른 .....

.....

⑤ ..... 제2항에도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 너비, 해당 .....

② ..... 제3조를 준용한다.

③ ..... 해당 .....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 제6조의2에 따라 .....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거주자 또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는 “거주자”라 한다) 전용주차 구간에 대하여는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 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별표 2의 이용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4. 높이제한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배/도로의 폭 이하. 다만, 배율 1.8배 미만인 경우 1.8배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

.....

② 제1항에 따라 ..... 해당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 제3조의2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너비 .....

나. .... 너비 .....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대지가 둘 이상의 .....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제7조1항에 따라 .....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 (생략) 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4의 월 정기 주차금액으로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범위에서 .....

③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기타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제14조(부대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문화 및 집회 시설로 한다. 제14조(부대시설의 종류) ..... 제6조제5항에 따라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법 제19조 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제3항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 제7조에 따라 ..... 해당 .....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 제7조에 따라 ..... 해당 .....

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생략)

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략)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 제19조제5항에 따라 ..... 해당 .....  
.....  
.....

② .. 제10조제1항에 따른 .....

.....  
.....  
..... 주차요금으로 .....  
.....

③ ..... 공영주차장 .....

.....  
.....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공영주차장의 .....  
.....

2. .... 공영주차장의 .....  
..... 해당 .....  
.....

3. ....  
..... 제9조제2항에 따른 .....  
..... 제5조에 따라 .....  
.....

4. 건축비는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야간개방) ① ~ ④ (생략)

⑤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견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주차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제3항에서 정한 월정주차료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생략)

제22조(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이하 이 장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의 대상)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

4. …… 해당 공영주차장 ……  
 …… 해당 …… 제86조

에 따라 ……

② …… 단서에 따라 ……  
 …… 범위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20조(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야간개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월 정기 주차요금에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조) …… 설치하려는 ……

제23조(보조의 대상) ……

1. …… 설치하려는 ……
2. …… 설

<p>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p> <p>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지파킹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p> <p>제24조(보조의 방법) ①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완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p> <p>⑤ (생략)</p> <p>제25조 (생략)</p> <p>제26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④ (생략)</p> <p>제27조·제28조 (생략)</p>	<p>치하려는 .....</p> <p>3. ....</p> <p>..... 참여하려는 .....</p> <p>제24조(보조의 방법) ① ..... 받으려는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를 .....</p> <p>.....</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5조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① ..... 제17조제2항에 따른 .....</p> <p>.....</p> <p>② ..... 부과하려면 .....</p> <p>.....</p> <p>③ ..... 제1항에 따라 ..... 부과하려면 .....</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제28조 (현행과 같음)</p>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구분	현행			개정안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 일반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5.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6.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7.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8.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9.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0.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1.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2.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3.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4.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5.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6.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7.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8.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9.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0.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1.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2.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3.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4.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5.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6.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7.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8.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9.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0.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1.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2.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3.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4.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5.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6.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7.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8.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39.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0.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1.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2.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3.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4.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5.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6.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7.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8.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49. 노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50. 장애인	500원	1,000원	1,500원	500원	1,000원	1,500원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생략)
  - 나. 야간 : 20:00 ~ 익일 08:0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생략)
  - 나. 2급지 : 제24주차장, 제25주차장, 반월, 대부, 안산동소재 주차장(수암봉 주차장을 제외한다)
  - 다. · 라. (생략)
4.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 이용 확인증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3급지 환승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 정기 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이용하려는
5.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해지는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 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6. (생략) (현행과 같음)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생략)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퍼센트를 감면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자(상이자 동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동승)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다만,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장애인 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마.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바.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40분(500원)을 주차할 수 있다. 다만, 40분 이후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

.....  
.....  
.....

나. (현행과 같음)

다. .... 제2조에 따른 .....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는 .....

라. ....  
.....  
.....  
.....  
..... 자동차는 .....  
.....  
...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 퍼센트를 감경한다. ....  
.....  
.....  
... 자동차는 .....  
.....  
.....

마. ....  
.....  
..... 차량은 .....  
.....

바. ....  
.....  
..... 30분을 .....  
..... 30분 .....

답한다.

사.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 (생략)

자.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20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1년간 감면한다.

차.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 경우 다자녀 가정은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의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생략)

8. 기준요금은 30분 단위로 징수하되, 기준시간을 초과한 10분이내의 추가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9. (생략)

10. 1일 주차요금이라 함은 장시간 주차를 목적으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날 주차장 운영개시 이전까지 유효하다. <단서 신설>

.....

사. ....  
..... 자동차는 .....

아. (현행과 같음)

자. ....  
제3조에 따른 .....

차. ....  
..... 자동차는 .....

7. (현행과 같음)

8.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으로 징수하되,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9. (현행과 같음)

10. ....  
..... 다만, 철도 환승목적으로 건축물식 공영유료주차장(주차빌딩)을 이용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 적용 시간은 05: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4조제 2항 관련)		[별표 6]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5조제 2항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1. 설치 가능 지역	1.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		…………… 제36조에 따른 ……………
2. 설치 가능 시설물	2. 설치 가능 시설물	2. ……………		2. ……………
상업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상업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단서 신설>			
3. 설치 대수	3. 설치 대수	3. 설치 가능 대수		3. 설치 가능 대수
가.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미만 : 자주식 주차장 설치	가.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미만 : 자주식 주차장 설치	가. ……………		가. ……………
나.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이상 : 최대 2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나.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이상 : 최대 2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나. ……………		나. …………… 초과 : 50대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의 최대 20% 이하(……………)
<신 설>	<신 설>			다.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증설되는 주차가 30대 이상 : 증설되는 주차대수의 최대 20% 이하 (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생략)	다. (생략)			라. (현행 다호와 같음)
4. (생략)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예외	5. 예외			<삭 제>
가.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13
----------	------

제안년월일 : 2010. 09. 29.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율과 감면 적용 규정을 일부 조정하고,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정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공영유료주차장 중 2급지와 3급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상이자 및 장애인 등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수정함(별표 2)
-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별표 5)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라목 중 “2시간”을 각각 “3시간”으로 한다.

급 지 구 분	30분 기본요금 (1회주차 1구역 최초 30분)	10분당 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선 분)	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주간	야간	전일	주말·공휴일
1 급 지	600원	300원	6,000원			80,000원	
2 급 지	400원	200원	3,000원			50,000원	
3급지	환승 차량	300원	200원	3,000원			40,000원
	비환승 차량	600원	300원	6,000원			80,000원
거주자 전용주차장				20,000원	15,000원	30,000원	5,000원 (수암동지역)

별표 5의 제2호 시설물의 설치기준 중 단서를 삭제한다.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b>[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5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설 치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1. (생략)</td> <td>(생략)</td> </tr> <tr> <td>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종교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 런프런츠편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애인식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면적 100㎡당 1대 (단, 장애인식당은 시설면적 80㎡당 1대)</td> </tr> <tr> <td>3. (생략)</td> <td>(생략)</td> </tr> <tr> <td>4. (생략)</td> <td>(생략)</td> </tr> <tr> <td>5. (생략)</td> <td>1. ~ 2. (생략)</td> </tr> <tr> <td>6. (생략)</td> <td>(생략)</td> </tr> <tr> <td>7. (생략)</td> <td>(생략)</td> </tr> <tr> <td>8. (생략)</td> <td>(생략)</td> </tr> <tr> <td>9. (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생략)	(생략)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종교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 런프런츠편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애인식당	시설면적 100㎡당 1대 (단, 장애인식당은 시설면적 80㎡당 1대)	3. (생략)	(생략)	4. (생략)	(생략)	5. (생략)	1. ~ 2. (생략)	6. (생략)	(생략)	7. (생략)	(생략)	8. (생략)	(생략)	9. (생략)	(생략)	<p><b>[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5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시 설 물</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설 치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1. (위안과 같음)</td> <td>(위안과 같음)</td> </tr> <tr> <td>2. ----- ----- ----- ----- ----- ----- -----</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면적 100㎡당 1대 &lt;단서 삭제&gt;</td> </tr> <tr> <td>3. (위안과 같음)</td> <td>(위안과 같음)</td> </tr> <tr> <td>4. (위안과 같음)</td> <td>(위안과 같음)</td> </tr> <tr> <td>5. (위안과 같음)</td> <td>1. ~ 2. (위안과 같음)</td> </tr> <tr> <td>6. (위안과 같음)</td> <td>(위안과 같음)</td> </tr> <tr> <td>7. (위안과 같음)</td> <td>(위안과 같음)</td> </tr> <tr> <td>8. (위안과 같음)</td> <td>(위안과 같음)</td> </tr> <tr> <td>9. (위안과 같음)</td> <td>(위안과 같음)</td> </tr> </tbody> </table>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2. ----- ----- ----- ----- ----- ----- -----	시설면적 100㎡당 1대 <단서 삭제>	3.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4.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5. (위안과 같음)	1. ~ 2. (위안과 같음)	6.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7.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8.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9.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생략)	(생략)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종교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 런프런츠편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애인식당	시설면적 100㎡당 1대 (단, 장애인식당은 시설면적 80㎡당 1대)																																								
3. (생략)	(생략)																																								
4. (생략)	(생략)																																								
5. (생략)	1. ~ 2. (생략)																																								
6. (생략)	(생략)																																								
7. (생략)	(생략)																																								
8. (생략)	(생략)																																								
9. (생략)	(생략)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2. ----- ----- ----- ----- ----- ----- -----	시설면적 100㎡당 1대 <단서 삭제>																																								
3.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4.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5. (위안과 같음)	1. ~ 2. (위안과 같음)																																								
6.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7.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8.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9. (위안과 같음)	(위안과 같음)																																								